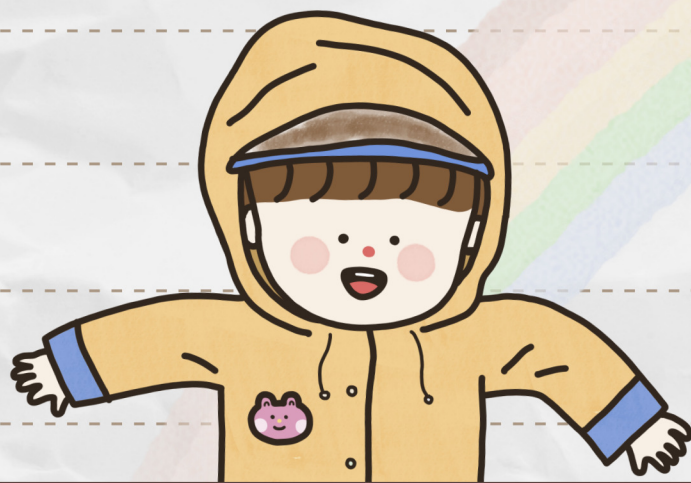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 개정

7월호

확인하고 준비해요



네이버카페 화학안전서포터즈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2025년 8월7일 화관법 개정

변경된 안전진단 주기를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2항

네 번째 정기검사 도래하는 경우 안전진단 수행

- ☒ 단, 안전진단 미수검 사업장은 종전 법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후 변경주기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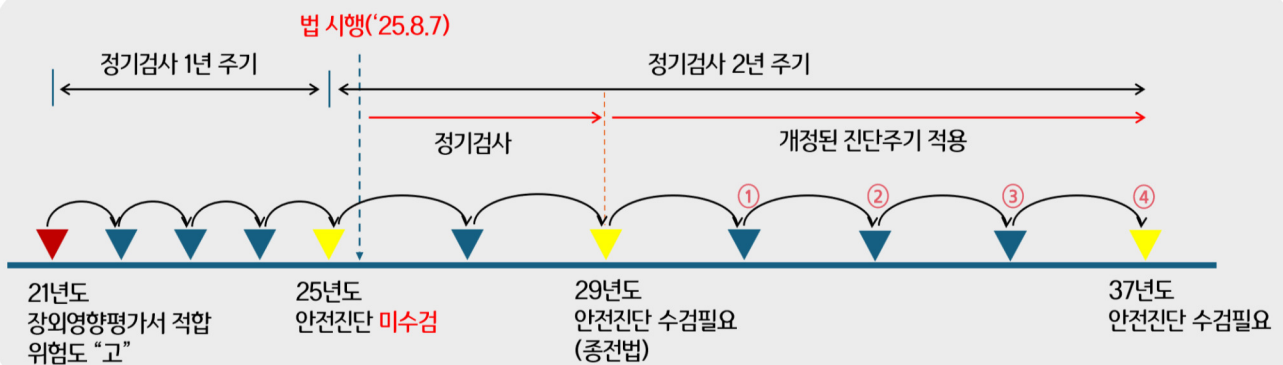
검사: 영업허가(1년) → 화관서 1군 나 사업장(2년)

진단: 장평 '고'(4년) → 화관서 1군 나 사업장(정기검사 4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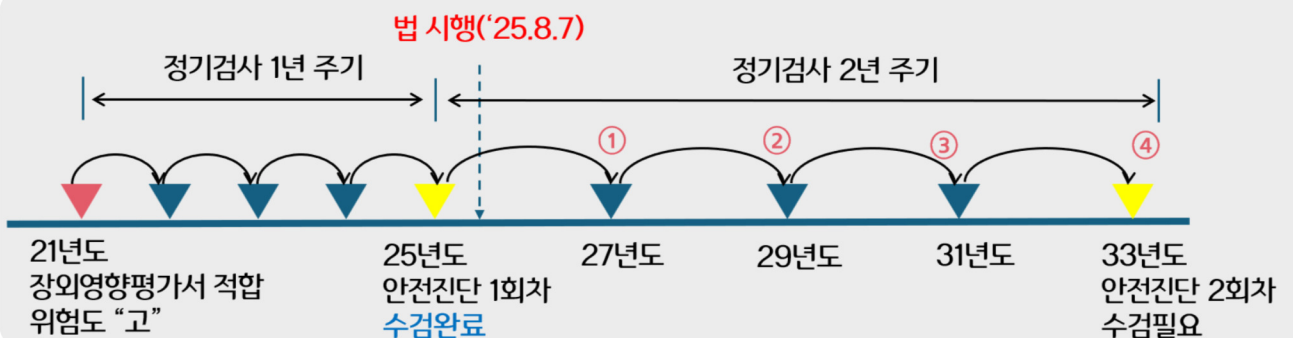
안전진단 미수검 사업장인 경우

- 종전의 법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후 변경된 주기 적용
- 정기검사 시기와 불일치 하는 경우 정기검사 시기에 맞춤(선택사항)



안전진단 수검 사업장인 경우

- 개정안 시행이전 최근 안전진단 기준으로 개편된 진단 주기 적용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지금 사전 신청하면 화관법 대응이 쉬워집니다!

변경되는 검사 주기와
안전진단 주기가 궁금해요!



그럴 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교육"을
신청하세요!

안전진단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럴 땐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지원"을 신청하세요!



기술지원 신청 안내

신청 대상
중소규모사업장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必)

신청 홈페이지
www.safechem.or.kr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 02-3153-
인천(서구), 고양, 파주, 김포 : 0686
인천, 시흥 : 0695
안산, 부천 : 0537

홈페이지 신청 절차 안내

step 01

무료 기술지원 선택

step 02

컨설팅 신청 선택

step 03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必)

step 04

신청서 최종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 주요 장비 및 활용 예시

01



적외선누출가스탐지카메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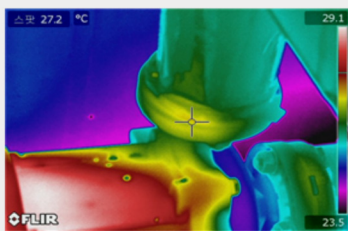


콘크리트반발경도측정기

03



펌프 진동 측정기



유해화학물질 배관 촬영
(배관 누출 확인)



대장시설 방류벽 측정
(방류벽 및 바닥 강도 확인)



펌프 진동 측정
(펌프 상태 확인)



정답을
맞춰보세요

더 안전한 방폭 조명은 어떤 걸까요?
(화학안전조성사업 지원 사례)



형광비점화(Ex nR)
방폭등

VS



LED내압(Ex d)
방폭등

형광비점화 방폭등의 경우 주변 열에 의해 조명 내부가 팽창한 후, 식으면서 수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간극이 생겨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이 다소 떨어짐